

수원지방법원 2021. 8. 26 선고 2020나932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전 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비즈

담당변호사 김동완

피고, 피항소인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전효철

변 론 종 결 2021. 7. 1.

판 결 선 고 2021. 8. 26.

제1 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10. 22. 선고 2020가단665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8. 6. 20. 접수 제7134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 또는 추가한 주장(① 피고가 시행한 재개발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볼 아무런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 ② 피고가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당시 적용되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현금청산 기간 내에 현금으로 청산하지 아니할 경우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현금청산 기간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그때까지의 이자를 지급하기만 하면 수용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2쪽 9행의 “현금청산자”를 “현금청산대상자”로 고친다.
- 제1심판결 5쪽 9행의 “사업으로서” 다음에 “2015. 12. 29. 구 토지보상법이 개정되면서 ‘도시정비법 제38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 공익사업의 종류 중 하나로 추가된 것과는 별개로”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6쪽 14행부터 7쪽 3행까지 부분을 “③ 구 도시정비법 제47조는 사업시행자가 그 기간 내에 현금청산을 하지 않은 경우 그 효과로서 수용권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구 도시정비법의 다른 조항에서도 현금청산 기간 내에 현금청산을 하지 않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수용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한편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 기간 내에 현금으로 청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관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구 도시정비법 제47조 제2항은 구 도시정비법 부칙<법률 제11293호, 2012. 2. 1.> 제1조 및 제8조에 따라 ‘2012. 8. 2. 이후 최초로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정비사업’부터 적용되므로, 피고에 대한 조합 설립인가가 이미 2012. 2. 21.에 이루어진 이 사건 재개발사업은 위 구 도시정비법 제47조 제2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아 피고가 현금청산 기간 내에 현금청산을 하지 않더라도 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나, 현금청산 기간 내에

현금청산을 하지 않은 사업시행자에게 이자 지급의무를 부과하는 구 도시정비법 제47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수용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정하여진다고 해석할 법률상 근거는 발견되지 않는다.”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증명을 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에,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그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관건적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변론을 재개하여 그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패소의 판결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은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20532 판결 등 참조). 원고는 변론종결 이후 제출한 2021. 8. 17.자 변론재개신청서를 통하여, ‘이 사건 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거이전비 등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심리·판단되지 않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수용재결은 손실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위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07813 판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도13704 판결)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수용재결의 위법성 및 효력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변론재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들고 있는 위 대법원 판결들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 등을 상대로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에서, 협의나 수용재결에서의 심리·판단을 통하여 결정된 주거이전비 등이 현금청산대상자 등에게 지급 또는 공탁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보아 현금청산대상자 등이 이를 이유로 해당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로서, 그와 사안을 달리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면서 그 등기원인인 이 사건 수용재결의 무효를 주장하는 이 사건에는 그대로 원용될 수 없다. 또한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주거이전비 등에 관하여 당사자 간의 협의 또는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의 심리·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주거이전비 등이 지급 또는 공탁되지 않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러한 사정을 들어 피고에게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인 이 사건 수용재결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볼 법률적 근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변론을 재개하지 않더라도 절차적 정의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김세윤, 판사 정세진, 판사 김지영

별지

부동산 목록

1.

안양시 동안구

면 적 : 151.9 ㎡

2.

건물의 표시 : 안양시 동안구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구 조 : 조적조 스라브지붕2층 단독주택

면 적 : 1층 79.41 ㎡

2층 75.42 ㎡

대피소 79.29 ㎡

